## 5.2.14 발파 해체작업

- (1) 화약류에 의한 발파 해체시에는 사전에 시험발파에 의한 폭력, 폭속, 진동치속도 등의 파쇄능력과 진동, 소음의 영향력을 검토하여야 한다.
- (2) 소음, 분진, 진동으로 인한 공해대책, 파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3) 화약류 취급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「총포화약법」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.
- (4) 해체대상 구조물의 구조도면을 입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상태 등에 대한 도면을 재작성하여 검토하여야 한다.
- (5) 구조도면 분석 및 기술적 검토를 거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면 및 작업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(가) 구조물의 천공위치 및 방법
- (나) 화약류의 종류 및 장약량
- (다) 사전 취약화 작업 위치
- (라) 뇌관의 시간차 배열 및 지발당 최대 허용장약량
- (마) 위험구역, 경계구역의 설정
- (6) 화약류 취급 및 화약발파는 KOSHA GUIDE C-46-2016 (발파공사 안전보건 작업 지침)의 규정에 따른다.
- (7) 폭파 시 인접구조물 및 주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폭약과 정확한 시간차를 계산하여야 한다.
- (8) 폭파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배관보온재 등 유해물질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.